

물놀이형 수경시설 변경신고서

※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.

접수번호		접수일시		처리기간 5일	
신고인	시설명				
	성명(대표자)				
	주소	(전화번호:)			
시설 주소		(전화번호:)			
변경사항	변경 전		변경 후		

「물환경보전법」 제61조의2제1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의2제4항에 따라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변경을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 (서명 또는 인)

시·도지사, 유역(지방)환경청장 귀하

첨부서류	1. 물놀이형 수경시설 신고증 2. 시설물 사후관리계획서(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쇄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) 3.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	수수료 없 음
------	--	------------

처리절차

신고서 작성
신고인

→

접수
(민원실)

→

검토

→

결재

→

통보

처리기관: 유역(지방)환경청(국가 또는 시·도 설치·운영시설)
시·도(시·군·구 또는 공공기관 등 설치·운영시설)

210mm×297mm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